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5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3
2. 촉법소년 기준 연령 조정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형사상 성년 기준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그 변경을 「소년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 「소년법」 제4조제1항은 동법의 규율대상인 10세 이상의 소년을
 ① 형사상 성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소년, ② 형사미성년으로서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소년, ③ 범죄행위 또는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소년으로 구분하므로,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이 변경될 경우 그 반영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인 소년	2. ----- ----- <u>12세</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소년사건의 유형과 그 대상

- 「소년법」상의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뉘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구분은 그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나 반사회적 비행행위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고(제2조),¹⁾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형사처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행위 당시 14세 이상이라야 부과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9조),²⁾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국한됨.

1) 제4조에 비추어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19세 미만’ 요건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동법에 따른 보호처분 시(제38조), 또는 형사처분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 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반면, 보호처분은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더 다양함(「소년법」 제4조제1항).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³⁾,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임.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은 아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우범소년)이나 소년형사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범죄소년)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⁴⁾

3) 같은 항 제2호 등에 비추어 14세 이상일 것이 요구됨.

4)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부과하려면 그 범죄소년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유책성이 필요하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유책성이 불필요하다고 이해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2014), 34-35.

다.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논의

- 「형법」과 「소년법」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기준 연령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형사책임을 획일적·일률적으로 부정하고, 대신 필요 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4조제1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생략)

형사책임에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요구되므로 (「형법」 제10조제1항 참조),⁵⁾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대상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연소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많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육을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임.

5)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최근 사회의 발달에 따라 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2018-2023년 동안의 대상 소년 연령별 보호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됨.

- 동 기간 10세 이상 14세 미만 총인구 대비 동 연령 소년 대상 보호처분 건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우범소년 대상 보호처분은 527건 증가한 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대상 보호처분은 5,197건 증가하였으므로, 촉법 소년 대상 보호처분이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됨.

< 대상자 연령별 보호처분(2018-2023) >

(단위: 천명, 건, 건/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 감
10-19세 총인구	4,416.5	4,232.6	4,138.0	4,115.6	4,118.3	4,088.0	△1.5
10-14세(A)	1,796.3	1,806.1	1,831.7	1,828.7	1,841.0	1,838.4	0.5
14-19세(B)	2,620.2	2,426.5	2,306.2	2,287.0	2,277.3	2,249.6	△3.0
전체 보호처분 (우범소년 대상)	24,494 (512)	24,131 (921)	25,579 (1,131)	22,144 (947)	24,933 (871)	30,253 (1,039)	4.3 (15.2)
10-14세(C)	6,682	7,310	7,255	7,486	9,592	11,879	12.2
14-19세(D)	17,812	16,821	18,324	14,658	15,341	18,374	0.6
대 비	C/A	4.0	4.0	4.1	5.2	6.5	11.7
	D/B	6.8	6.9	7.9	6.7	8.2	3.7

주: 대상자 연령은 처분 시 기준

자료: 사법연감

- 이러한 촉법소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범위 축소,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 하향 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 만 12세 이상인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동법상의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가.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u>14세</u> 미만인 소년	2. ----- ----- <u>12세</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소년을 나타내기 위한 범주이므로, 그 개정 여부는 「형법」상의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의 개정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⁶⁾

6) 동 개정안은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하여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제2조 및 제4조),⁷⁾ 촉법소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년 중에서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인 14세에 미달하는 소년임.

따라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형법」에서 형사상 성년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야 함.

-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⁸⁾

- 현재 각국의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은 주로 10-14세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음.

< 국가별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 >

구 분	미국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기준 연령	7-14세*	10세	12세	13세	14세	14세	15세

* 주별로 상이

주: 기준 연령 미만인 경우 형사책임 미부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제2조는 19세 미만의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에 비추어 10세 이상일 것이 요구됨.

8) 위 2022헌마553 결정의 보충의견은 해당 조항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입법형성권의 행사 결과가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참고로, 「소년사법운영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⁹⁾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2019년 일반논평을 통하여 14세 이상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독려한 바 있음.¹⁰⁾

9)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1. 29. 채택,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4. 형사책임의 연령

4.1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의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제도에서는 소년의 정서, 정신,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UN CRC,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나.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과의 관계, 학제 및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2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는 점,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상 성년 기준 연령의 하향을 전제로 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에서 12~13세의 아동은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을 유지
할 것을 독려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2
